

고시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고시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운영하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목사고시를 시행하는 데 있다.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15인(여성 위원 1인 추가)으로 조직하고 그 중 위원회 추천 전문위원 1인을 둔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5인 이상 교체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비 총회원 중에서도 선임될 수 있다.

제4조 (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과 선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1인, 서기 1인
2. 본 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정기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하고 출제위원은 호천으로 정한다.

제5조 (회의)

정기회는 총회 후 첫 번째 회의이고, 위원장이 필요를 인정할 때나 회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를 수시 소집한다. 개회 성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6조 (결의)

1. 본회의 모든 결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찬성 결의로 한다.
2. 서면 결의는 전원 일치 찬성 결의로 한다.

제7조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고시위원회 대표 9인(위원장 포함),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전문인(약간 명)으로 구성된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 단, 고시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제8조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1. 수련대상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의 대상은 2003년도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입학생부터 해당되며, 다음과 같다.

- 1) 총회 직영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필수 교역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M.Div.)를 취득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
- 2) 총회직영 한신대학교 대학원에서 필수 교역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Th.M., M.A.)를 취득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
- 3) 총회직영 한신대학교 대학원에서 필수 교역과목을 이수하고 박사학위(Th.D., Ph.D.)를 취득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
- 4) 타 신학대학 대학원 졸업자로서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에서 1년 동안 필수 이수과목을 이수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단, 위탁교육 교과목 선정은 위원장과 신학대학원장이 정한다.)

2. 수련과정 특별사항

군목의 경우는 헌법 정치 제20조 2항에 의거하여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예외자로 한다.

3. 수련과정 기간

수련과정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전임사역자가 아닌 경우 3년으로 한다.

4. 수련과정 교과목

교과목 편성은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5. 수련과정 주관 및 장소

- 1) 고시위원회 지도 하에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가 시행한다.
- 2) 장소는 총회와 필요한 장소로 한다.

6. 수련과정 재정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실시함에 있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재정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 고시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허락을 받는다.

- 1)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총회와 수련생이 소속한 노회들이 각각 2분의 1씩 분담한다.
- 2) 수련생이 소속한 노회들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 총액의 2분의 1은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참여하는 노회와 수련생의 수를 감안한다.
- 3)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의 노회 분담금은 수련생의 등록 당시 소속 노회가 부담한다.

7. 등록절차

- 1) 총회 고시위원회는 매년 1월에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등록절차를 공고한다.
- 2)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지원하는 사람은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등록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1) 등록서류

- ① 신규(1년차) - 등록신청 소정양식,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추천청원서(노회제출용),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추천서, 제직회의록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 ② 계속(2, 3년차) - 등록신청 소정양식,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계속추천 청원서(노회제출용),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계속추천서, 제직회의록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2) 등록기간 - 매년 5월 중으로 한다.

- (3) 등록접수가 완료되면,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는 그 등록 현황을 총회 고시위원회와 소속 노회에 보고한다.

8. 등록 연기신청

수련기간 중 군입대,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지도목사를 통해, 소속 노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연기 신청을 한다.

9. 수련과정 이수

- 1) 본 과정은 수련과정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목회실습(지도위원의 지도), 집중교육, 중간평가로 진행되는 1년차 과정과 수련과정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목회실습(지도위원회 지도), 집중교육, 종합평가로 진행되는 2년차 과정(3년차 과정)에 이르는 총 2년(3년)에 걸쳐 시행된다.
- 2) 총회는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헌법 정치 제38조 2항에 의하여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제9조 (수련과정 지도목사)

수련생의 목회실습을 지도하기 위해 ‘지도목사’를 두며, 지도목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도목사는 소속교회 당회장(준당회장)으로 한다.
2. 지도목사는 수련생의 목회실습을 관리하고 지도하며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매 분기별로 해당자에 대한 ‘목회실습 평가서’를 작성한다.
3. 목회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및 불합격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에 따른다.
 - 1) 평가점수는 A(100-90), B(89-80), C(79-70), D(69-60), F(59점 이하)로 하고 F로 판정되면 불합격으로 한다.
 - 2) 불합격 시에는 목회 실습을 1분기 연장할 수 있으며, 불합격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는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4. 지도목사는 매 분기별로(총 4분기 또는 6분기) 작성한 ‘목회실습평가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수련생의 ‘목회실습 평가서’를 취합하여 총회 고시위원회와 소속 노회에 제출한다.

제10조 (총회 위탁교육)

1. 대상

- 1)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위한 총회 위탁교육 과정
 - (1) 정부 인가 타 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 2) 타교파 목사의 총회 위탁교육 과정
 - (1) 정부 인가 타 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본 교단이 협력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계개혁신교회커뮤니온(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 (2) 회원교단에서 목사 임직을 받은 사람이며, 그 외 사항은 총회 고시위원회 2/3 결의에 의한다.
-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제협력교단에서 목사 임직을 받은 사람

2. 위탁교육 기간

- 1) 총회 위탁교육은 1년(2학기)을 기본 과정으로 하되, 피교육자의 이수 과목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1) 신학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는 6개월(1학기), 교단 신학과 관련 성 및 이수 과목이 미흡할 경우는 1년 이상(2학기 이상)의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2) 고시위원장, 신학대학원장 및 담당 교수가 심의하여 피교육자의 교육 기간(이수 과목)을 정한다.

3. 위탁교육 주관 및 장소

총회 고시위원회가 시행하며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교육한다.

4. 위탁교육 교육비

총회 위탁교육 교육비는 총회 고시위원회가 책정한다.

5. 접수절차

- 1) '총회 위탁교육'에 지원하는 사람은 접수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접수기간 내에 접수한다.
 - (1) 접수서류

타교파 소속 정부인가 신학대학원 졸업자가 본 교단에서 목사 임직을 받고자 하면, 노회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총회 위탁교육과정을 청원한다. 총회 위탁교육과정 이수자는 총회 직영 신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를 청원할 수 있다.

 - ①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위한 위탁교육
 - 노회제출서류 : 총회 위탁교육 추천 청원서,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노회에만 제출), 주민등록초본, 최종 졸업증명서

와 성적증명서, 증명사진 각 1부 및 해당 노회의
추가 요청 서류(해당 노회 문의)

- 총회제출서류 : 총회 위탁교육 추천서,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최종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증명사진 각 1부

② 타교파 목사편입을 위한 위탁교육

- 노회제출서류 : 타교파 목사 편입을 위한 노회 추천 청원서
 - ▶ 첨부서류 : 목사임직(안수) 증명서 2부, 이력서(총회양식, 사진첨
부)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노회에만 제출), 주민등
록초본 2부, 해당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부, 대
학원) 각 2부, 해당 노회 목사 2인 이상의 추천서 2
부, 및 해당 노회의 추가 요청 서류 (해당 노회 문의)
- 총회제출서류 : 타교파 목사 편입을 위한 총회 위탁교육과정 추천서
 - ▶ 첨부서류 : 타교파 목사노회가입 확인서, 목사임직(안수) 증명서,
이력서(총회양식, 사진첨부), 주민등록초본, 해당 졸
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부, 대학원), 증명사진(이
력서와 별도) 1매

(2) 접수기간 - 매년 1월과 6월 둘째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6. 총회 고시위원회는 노회가 추천한 자를 심의하여 결과를 본인과 노회에 통보한다.
허락된 자는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일정한 교육비를 총회에
납부한다.

7. 위탁교육 연기

위탁교육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총회 고시
위원회에 연기 신청하여 최대 1년간 연기할 수 있다. 단, 위탁교육 허락 후 첫
학기 연기는 할 수 없다.

8. 위탁교육 이수

- 1)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위한 총회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는 헌법 정치 제40조
5항에 의하여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등록자격을 부여한다.

- 2) 타교파 목사 편입을 위한 총회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는 헌법 정치 제23조 3항에 의거 총회 목사 편입고시(헌법, 면접)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제11조 (목사고시)

1. 응시자격

- 1)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2) 타 신학대학원 또는 대학원 신학과를 졸업하고 타 교파에서 목사 안수 후 목회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에서 1년간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
- 3)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개신교파 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목사로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4) 단 군목으로 입대할 경우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과 함께 목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2. 고시과목

- 1) 필답고사
 - (1) 성경
 - (2) 설교
 - (3) 교단 헌법
- 2) 면접

소명, 품성, 자질에 대한 종합평가

3. 고시의 일시와 장소

- 1) 일시 - 연 2회 실시한다.
- 2) 장소 - 서울을 원칙으로 한다.

4. 고시방법

- 1) 합격표준 - 100점 만점에 70점을 합격점으로 하고 합격된 과목은 1년간 유효하다.
- 2) 서류 심사는 위원장과 서기가 전담한다.
- 3) 시험지에는 수험번호와 답안만 쓰고 그 외의 것은 일절 금한다.

- 4) 시험지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것 이외의 것은 무효로 한다.
- 5) 시험 감독은 본 위원회 위원과 출제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 6) 면접시험은 3인 시험관을 1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원 합의로만 합격한다.
- 7) 출제위원이 채점한 후 시험지를 개봉하고 성적을 집계하는 일은 위원장과 서기가 한다.

5. 고시연기

- 1) 군 복무, 유학, 기타 본 위원회가 인정할 만한 사유로 고시연기 청원이 있을 경우 해 기한만큼 유효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고시의 수속)

1. 서류제출

노회는 목사고시 응시 지원자를 심의한 후 적격하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고시일 1개월 전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통은 노회가 보존하고 1통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목사고시 청원서
- 2) 목사고시 추천서
- 3) 총회 양식에 의한 이력서
- 4) 최종 출신 학교장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5) 18개월 이상 생보부담금 납입증명서
- 6)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이수(예정)증명서
- 7) 증명사진
- 8) 목사고시 추천 청원서(노회 제출용)
- 9)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확인서(전문인증기관 또는 총회 등)

2.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는 총회장과 고시위원장 명의로 즉시 해당 노회에 통지하고 발표한다.

제13조 (경비)

1. 수험료 - 목사고시 응시 지원자는 수험료를 목사고시 서류접수 시에 납부하고 수험 번호를 받아야 한다.
2. 예산 - 총회 예산에 의한다.

제14조 (총회 고시자료집 집필 및 관리)

1. 총회 고시자료집을 집필하고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한다.

제15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60년 6월 제45회 총회 제정
1988년 9월 제73회 총회 개정
1991년 9월 제76회 총회 개정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제97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